|  |  |  |
| --- | --- | --- |
|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 및 심사 임시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령 제6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과 《에너지절약 업무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의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 및 심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반포,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張平  2010년 9월 17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의 에너지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고 에너지낭비를 원천적으로 두절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과 《에너지절약 업무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각급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가 관리하며 중국 경내에서 건설하는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에너지절약 평가라 함은 에너지절약 법규, 표준에 근거하여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의 에너지이용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평가보고서, 에너지절약평가표(이하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이라 함)를 편성하거나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작성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에너지절약 심사라 함은 에너지절약 법규, 표준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형성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등록 비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4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평가문건과 심사의견, 에너지절약 등기표 및 그 등록비치 의견은 프로젝트 심사비준, 허가 또는 착공 건설의 전치 요건과 프로젝트 설계, 시공, 준공검수의 중요한 의거로 된다.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에너지절약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 심사비준, 허가기관은 심사비준 또는 허가를 해서는 아니되며, 건설단위는 건설에 착수해서는 아니된다. 이미 건설한 경우에는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지 못한다.  **제2장 에너지절약 평가**  **제5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는 프로젝트가 건설 및 생산에 투입된 후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1) 연간 종합 에너지소비량이 표준석탄 기준 3,000톤 이상(표준석탄 기준 3,000톤 포함, 전력 환산계수는 당량치에 따름, 이하 동일)이거나, 연간 전력소비량이 500만 킬로와트시 이상이거나, 연간 석유소비량이 1,000톤 이상이거나, 연간 천연가스소비량이 1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는 에너지절약 평가보고서를 단독으로 편성해야 한다.  (2) 연간 종합 에너지소비량이 표준석탄 기준 1,000에서 3,000만 톤(3,000톤 미포함, 이하 동일)이거나, 연간 전력소비량이 200만에서 500만 킬로와트시거나, 연간 석유소비량이 500에서 1,000톤이거나, 연간 천연가스소비량이 50만에서 100만 세제곱미터인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는 에너지절약 평가표를 단독으로 작성해야 한다.  상기 조항 이외의 프로젝트는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거  (2) 프로젝트 개요  (3) 에너지절약 공급 상황에 대한 평가, 이에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에너지자원 조건과 프로젝트가 소재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영향 평가 포함  (4) 프로젝트 건설방안의 에너지절약 평가, 이에는 프로젝트 위치선정, 총평면도, 제조공학, 에너지사용 공학 및 에너지 사용설비 등 면의 에너지절약 평가 포함  (5) 프로젝트 에너지소비 및 에너지 효율수준 평가, 이에는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비구조, 에너지 이용효율 등 면의 분석평가 포함  (6) 에너지절약 조치 평가, 이에는 기술조치와 관리조치 평가 포함  (7) 존재하는 문제와 건의  (8) 결론.  에너지절약평가문건과 에너지절약 등기표는 이 방법의 첨부문건에서 요구한 내용 심도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7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건설단위는 능력을 구비하는 기구에 위임하여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을 편성하게 해야 한다. 프로젝트 건설단위는 자체로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의 편성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하며, 프로젝트 예산에서 지출한다.  **제3장 에너지절약 심사**  **제9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심사는 프로젝트 관리권한에 따라 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비준 또는 허가를 받는 프로젝트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심사비준 또는 허가하는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심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실시하며, 지방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가 심사비준, 허가, 등록 비치를 하거나 또는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 허가를 받는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심사는 지방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10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또는 허가제를 실시하는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건설단위는 사업성연구보고서 또는 프로젝트 신청보고서를 제출할 때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을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받거나 또는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제출하여 등록 비치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비치제를 실시하는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를 실시한다.  **제11조**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프로젝트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을 접수한 후 유관기구에 평가 심사를 위임하여 평가심사 의견을 작성하게 하여 에너지절약 심사의 중요한 의거로 해야 한다.  수임 평가심사기구는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이 규정한 시한 내에 평가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평가심사기구는 평가 심사를 실시할 때 프로젝트 건설단위에 관련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의 평가심사 비용은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의 동급 재정에서 지출하며, 그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주로 아래의 요건에 의거하여 프로젝트 에너지절약평가문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1) 에너지절약 평가가 의거한 법률, 법규, 표준, 규범, 정책 등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2) 에너지절약 평가문건의 내용심도가 요구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3) 프로젝트 에너지사용 분석의 객관성과 정확성, 평가방법의 과학성, 평가결론의 정확여부  (4)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이 제기한 조치와 건의가 합리하고 시행 가능한지의 여부.  **제14조**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에너지절약 평가보고서를 접수한 후 15일 근무일 이내에, 에너지절약 평가표를 접수한 후 10일 근무일 이내에 에너지절약 심사의견을 형성해야 하며, 에너지절약 등기표를 접수한 후 5일 근무일 이내에 등록 비치를 완료해야 한다.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의 평가 위임시간은 전 항이 규정한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에너지절약 심사( 위임심사 포함) 시간은 프로젝트 심사비준 또는 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심사의견은 프로젝트 심사비준 또는 허가 문건과 같이 발부한다.  **제16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가 심사비준, 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허가문건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심사 또는 에너지절약 심사의견 연기 허가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와 처벌**  **제17조**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 설계, 시공 및 사용 투입 과정에서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에너지절약평가문건과 그 에너지절약 심사의견, 에너지절약 등기표 및 그 등록비치 의견의 실행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제18조** 건설단위가 프로젝트 분할, 허위자료 제공 등의 부당수단을 취하여 에너지절약 심사에 통과된 경우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당해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심사의견 또는 에너지절약 등록비치 의견을 취소하며, 프로젝트 심사비준, 허가기관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제19조** 에너지절약평가문건 작성기구가 허위를 날조하여 에너지절약평가문건의 내용부실을 초래한 경우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20조** 에너지절약 평가심사, 심사, 검수를 담당한 업무직원이 사리를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평가심사 결론의 엄중한 부실을 초래하거나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에너지절약 심사에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주며, 형법을 범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1조** 프로젝트 심사비준 또는 허가를 담당한 업무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에너지절약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를 심사 비준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주며, 형법을 범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2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에너지절약 심사에 통과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건설에 착수하거나 생산투입, 사용한 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심사기관은 건설 또는 생산, 사용을 정지시키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할 수 없거나 기한이 지나도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생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본급 인민정부에 요청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령을 내리게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다.  **제5장 부 칙**  **제23조** 성급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에너지절약 업무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및 이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 이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评估和**  **审查暂行办法**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令第 6 号  依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和《国务院关于加强节能工作的决定》，为加强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管理，特制定《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评估和审查暂行办法》，现予发布施行。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主任：张平  二〇一〇年九月十七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管理，促进科学合理利用能源，从源头上杜绝能源浪费，提高能源利用效率，根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和《国务院关于加强节能工作的决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各级人民政府发展改革部门管理的在我国境内建设的固定资产投资项目。  **第三条** 本办法所称节能评估，是指根据节能法规、标准，对固定资产投资项目的能源利用是否科学合理进行分析评估，并编制节能评估报告书、节能评估报告表（以下统称节能评估文件）或填写节能登记表的行为。  本办法所称节能审查，是指根据节能法规、标准，对项目节能评估文件进行审查并形成审查意见，或对节能登记表进行登记备案的行为。  **第四条** 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评估文件及其审查意见、节能登记表及其登记备案意见，作为项目审批、核准或开工建设的前置性条件以及项目设计、施工和竣工验收的重要依据。  未按本办法规定进行节能审查，或节能审查未获通过的固定资  产投资项目，项目审批、核准机关不得审批、核准，建设单位不得开工建设，已经建成的不得投入生产、使用。  **第二章 节能评估**  **第五条** 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评估按照项目建成投产后年能源消费量实行分类管理。  （一）年综合能源消费量3000吨标准煤以上（含3000吨标准煤，电力折算系数按当量值，下同），或年电力消费量500万千瓦时以上，或年石油消费量1000吨以上，或年天然气消费量100万立方米以上的固定资产投资项目，应单独编制节能评估报告书。  （二）年综合能源消费量1000至3000吨标准煤（不含3000吨，下同），或年电力消费量200万至500万千瓦时，或年石油消费量500至1000吨，或年天然气消费量50万至100万立方米的固定资产投资项目，应单独编制节能评估报告表。  上述条款以外的项目，应填写节能登记表。  **第六条** 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评估报告书应包括下列内容：  （一）评估依据；  （二）项目概况；  （三）能源供应情况评估，包括项目所在地能源资源条件以及项目对所在地能源消费的影响评估；  （四）项目建设方案节能评估，包括项目选址、总平面布置、生产工艺、用能工艺和用能设备等方面的节能评估；  （五）项目能源消耗和能效水平评估，包括能源消费量、能源消费结构、能源利用效率等方面的分析评估；  （六）节能措施评估，包括技术措施和管理措施评估；  （七）存在问题及建议；  （八）结论。  节能评估文件和节能登记表应按照本办法附件要求的内容深度和格式编制。  **第七条** 固定资产投资项目建设单位应委托有能力的机构编制节能评估文件。项目建设单位可自行填写节能登记表。  **第八条** 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评估文件的编制费用执行国家有关规定，列入项目概预算。  **第三章 节能审查**  **第九条** 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审查按照项目管理权限实行分级管理。由国家发展改革委核报国务院审批或核准的项目以及由国家发展改革委审批或核准的项目，其节能审查由国家发展改革委负责；由地方人民政府发展改革部门审批、核准、备案或核报本级人民政府审批、核准的项目，其节能审查由地方人民政府发展改革部门负责。  **第十条** 按照有关规定实行审批或核准制的固定资产投资项目，建设单位应在报送可行性研究报告或项目申请报告时，一同报送节能评估文件提请审查或报送节能登记表进行登记备案。  按照省级人民政府有关规定实行备案制的固定资产投资项目，按照项目所在地省级人民政府有关规定进行节能评估和审查。  **第十一条** 节能审查机关收到项目节能评估文件后，要委托有关机构进行评审，形成评审意见，作为节能审查的重要依据。  接受委托的评审机构应在节能审查机关规定的时间内提出评审意见。评审机构在进行评审时，可以要求项目建设单位就有关问题进行说明或补充材料。  **第十二条** 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评估文件评审费用应由节能审查机关的同级财政安排，标准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十三条** 节能审查机关主要依据以下条件对项目节能评估文件进行审查：  （一）节能评估依据的法律、法规、标准、规范、政策等准确适用；  （二）节能评估文件的内容深度符合要求；  （三）项目用能分析客观准确，评估方法科学，评估结论正确；  （四）节能评估文件提出的措施建议合理可行。  **第十四条** 节能审查机关应在收到固定资产投资项目节能评估报告书后15个工作日内、收到节能评估报告表后10个工作日内形成节能审查意见，应在收到节能登记表后5个工作日内予以登记备案。  节能评估文件委托评审的时间不计算在前款规定的审查期限内，节能审查（包括委托评审）的时间不得超过项目审批或核准时限。  **第十五条** 固定资产投资项目的节能审查意见，与项目审批或核准文件一同印发。  **第十六条** 固定资产投资项目如申请重新审批、核准或申请核准文件延期，应一同重新进行节能审查或节能审查意见延期审核。  **第四章 监管和处罚**  **第十七条** 在固定资产投资项目设计、施工及投入使用过程中，节能审查机关负责对节能评估文件及其节能审查意见、节能登记表及其登记备案意见的落实情况进行监督检查。  **第十八条** 建设单位以拆分项目、提供虚假材料等不正当手段通过节能审查的，由节能审查机关撤销对项目的节能审查意见或节能登记备案意见，由项目审批、核准机关撤销对项目的审批或核准。  **第十九条** 节能评估文件编制机构弄虚作假，导致节能评估文件内容失实的，由节能审查机关责令改正，并依法予以处罚。  **第二十条** 负责节能评审、审查、验收的工作人员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导致评审结论严重失实或违规通过节能审查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一条** 负责项目审批或核准的工作人员，对未进行节能审查或节能审查未获通过的固定资产投资项目，违反本办法规定擅自审批或核准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二条** 对未按本办法规定进行节能评估和审查，或节能审查未获通过，擅自开工建设或擅自投入生产、使用的固定资产投资项目，由节能审查机关责令停止建设或停止生产、使用，限期改造；不能改造或逾期不改造的生产性项目，由节能审查机关报请本级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关闭；并依法追究有关责任人的责任。  **第五章 附 则**  **第二十三条** 省级人民政府发展改革部门，可根据《中华人民共和国节约能源法》、《国务院关于加强节能工作的决定》和本办法，制定具体实施办法。  **第二十四条** 本办法由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负责解释。  **第二十五条** 本办法自2010年11月1日起施行。 |